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82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23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이일준, 임현주,
정윤주

1. 제안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조문 및 서식 표기, 법령 인용 방식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와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6조)
- 나.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 가산점 비율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표기를 통일함(안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4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3. 27. ~ 2026. 4.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을 “경력경쟁임용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전문경력관 규

정」 제6조제1호”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등록공고일로”를 “등록공고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을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해지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거”를 “「지방공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u></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9조(응시연령) <u>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u></p> | <p>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u>----- ----- ----- ----- -----.</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u>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u>----- ----- ----- ----- ----- ----- ----- <u>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응시연령) <u>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u></p> |

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생략)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삭제

2. 삭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에 -----

-----.

③ -----

-- 그 밖에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 해당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

로 별표 7의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생략)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② (생략)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력경쟁임용 하려는 -----

-----.

1. ~ 3. (생략)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생략)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

----- 등록
공고일----- 별지
제2호서식-----

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 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 별지 제3호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제2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별 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생략)

제34조(임용절차)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61조-----

제30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9호서식-----.

제31조(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4조(임용절차) ① -----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임용약정) -----
----- 별지 제11호서식-----

의거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생략)

제38조(임용약정의 해지) ①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보수결정) ①·② (생략)

③ 임기제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37조(근무기간의 연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8조(임용약정의 해지) -----

----- 하려는 -----

-----.

제40조(보수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
-----.